③ 방송국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방송국은 호서대학교교육방송국(이하 "방송국"이라 한다)이라 칭하며, 호출부호는 H.S.B.S(Hoseo University Broadcasting System)라 칭한다.

제2조(위치) 본 방송국은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 방송국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본교의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함과 건전한 학풍조성 및 교양과 정서함양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중립과 독립의 원칙) 본 방송국은 정치적, 상업적 제요소를 배제하고 방송 및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5조(방송국장) 방송국장은 본 대학교의 총장이며 대외적으로 방송국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실무국장의 임명권을 갖는다.

제6조(주간교수) 방송주간은 본 대학 교수 중에서 방송국장이 임명한 자로서 방송의 연구 및 제반활동에 관한 지도를 한다.

제7조(실무국장) 방송국의 실무국장은 방송국의 국원을 대표하고 모든 실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주간교수의 지도 아래 방송프로그램을 기획, 운영하며 국원의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.

제8조(부서) 본 방송국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부, 보도부, 아나운서부, 기술부 등을 둔다.

제9조(부장) 각 부장은 4학기를 수료한 국원 중에서 선발하되 실무국장의 제청에 주간교수가 임명한다.

제10조(분장) 각 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.

- 1. 편 성 부 : 편성부는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한다.
- 2. 보 도 부 : 보도부는 뉴스취재 및 이에 따르는 제반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한다.
- 3. 아나운서부 : 아나운서부는 뉴스프로그램 및 아나운서가 담당해야 할 프로그램을 담당한다.
- 4. 기 술 부 : 기술부는 방송의 기술운영 및 이에 따른 기재관리 및 정비를 담당한다.

제 3 장 국 원

제11조(국원의 자격) 본 방송국의 국원은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소정의 선발과정 및 수습기

간을 거친 뒤 실무국장의 추천으로 주간 교수가 임명한다.

제12조(국원의 종류) 본 방송국의 국원에는 수습국원, 정국원 및 명예국원으로 한다.

- 1. 수습국원은 본교 1학년 재학생으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.
- 2. 정국원은 1학기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실무국장의 제청으로 주간 교수가 임명한다.
- 3. 명예국원은 본 방송국 동문과 본 방송국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.

제13조(자격상실) 본 방송국 국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- 1. 학칙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
- 2. 학업성적이 평점 평균 2.8에 미달하는 경우와 학생회 및 동아리에 가입한 때
- 3. 입대하거나 휴학한 때

제 4 장 재 정

제14조(재정) 본 방송국의 재정은 교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제15조(집행) 본 방송국의 재정지출은 주간교수의 품의에 의하여 방송국장의 결재를 얻어 행한다. 제16조(회계연도) 본 방송국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- 2. 이 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